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6.6.8(수) 17:00

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#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발의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01일

## 3. 제안 이유

-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,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는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적용기준 마련(안 제18조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,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